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 폐지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1482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 폐지 및 무항생제원료<br>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 | 2  |
| <참고자료> .....                                            | 24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5. 12. 3.
3. 회 부 일 : 2025. 12.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가공·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 폐지 및 무항생제원료가 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중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가공·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16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의 2, 제55조).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br>-----<br>-----<br>-----.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  
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  
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 5의2. (생 략)

<신 설>

6. (생 략)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  
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  
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  
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  
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생 략)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  
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  
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  
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

다. 무항생제수산물

3.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이  
란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  
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  
-----무농약원료가공식  
품·무항생제수산물·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  
-----  
-----  
-----.

8. (현행과 같음)

9.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  
 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  
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  
 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  
 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  
 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  
 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  
 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  
 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  
 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  
 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

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  
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  
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  
식품-----  
 --.

② -----  
 -----  
 -----무농  
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제4조(사업자의 책무) -----  
 -----  
 -----  
 -----  
 -----  
 -----  
 -----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지원

----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생략)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 11. (생략)

③ (생략)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생략)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7.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  
-----  
-----  
-----  
-----  
-----  
-----  
-----  
-----  
-----  
-----.

1.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4장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  
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  
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  
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  
상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  
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  
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  
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  
는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  
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 ①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  
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② -----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  
생제원료가공식품-----무농약원  
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③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  
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

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

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④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⑤ -----무농약원료가공

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무농약표시 또는 무항생제표시-----  
-----.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② -----  
-----  
-----  
-----  
-----  
-----  
-----

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6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제36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①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  
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에 ----- 무항생제 -----  
-----  
-----  
-----무농  
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표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이나 무항생제수산물-----  
-----  
----- 무농약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용할 수 있다.

③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 표시”로 본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에 대한 감시·지도·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

무농약표시 또는 무항생제표시-----.

③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우선구매) ①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
| <p>력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나. 검토의견

### 1)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 폐지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는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인증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sup>1)</sup>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에 인증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제도<sup>2)</sup> 시행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략)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물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물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이하 생략)

(2021년~) 이후 어업인의 관심 증대로 신규 인증 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는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2건)가 극히 저조한 상황임.

### < 친환경 인증 수산물 통계 >

(단위: 건수)

| 구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총계       | 4   | 39  | 60  | 74  | 88  | 76  | 84  | 91  | 122 | 216 | 284 | 369 | 421 |
| 유기수산물    | -   | 5   | 10  | 15  | 17  | 12  | 15  | 14  | 31  | 88  | 120 | 131 | 169 |
| 유기가공식품   | 2   | 33  | 46  | 54  | 63  | 55  | 61  | 70  | 75  | 83  | 94  | 103 | 108 |
| 무항생제 수산물 | 2   | 1   | 4   | 5   | 8   | 9   | 8   | 7   | 16  | 45  | 90  | 129 | 194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2   | 0   |

자료: 해양수산부

###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지원 통계 >

(단위: ha, 백만원, 개소)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예산          | 9,379 | 9,379 | 9,379 | 14,494 | 13,045          |
| 지원어가수       | 252   | 593   | 671   | 875    | 1,044<br>(신청기준) |
| 지원금액        | 4,714 | 9,193 | 9,202 | 13,224 | 정산 중            |
| 어가당<br>지원금액 | 18.7  | 15.5  | 13.7  | 15.1   | 정산 중            |

자료: 해양수산부

####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생략)

**< 현행법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현황 >**

| 구분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br>비사용 수산물                                                                                                                                                                                                                                                                         | 유기가공식품                                                                                                                                                                     |
|----------|-------------------------------------------------------------------------------------------------------------------------------------------------------------------------------------------------------------------------------------------------------------------------------------------------------------------|---------------------------------------------------------------------------------------------------------------------------------------------------------------------------------------------------------------------------------------------------------------------------------------------------------------|------------------------------------------------------------------------------------------------------------------------------------------------------------------------------------------------------------------------------------------------------------------------------------------|----------------------------------------------------------------------------------------------------------------------------------------------------------------------------|
| 정의       | 생물의 다양성 증진,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물질을 최소화한 수산물                                                                                                                                                                                                                                                                      | 항생제 및 항균제 등을 최소화한 수산물                                                                                                                                                                                                                                                                                         |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는 수산물                                                                                                                                                                                                                                                                       | 유기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 인증<br>표시 |                                                                                                                                                                                                                                  |                                                                                                                                                                                                                              |                                                                                                                                                                                                        |                                                                                         |
| 인증<br>대상 | 양식수산물                                                                                                                                                                                                                                                                                                             | 양식수산물 중<br>해조류를 제외한<br>수산물                                                                                                                                                                                                                                                                                    | 양식수산물 중<br>해조류(김, 미역,<br>파래 등)                                                                                                                                                                                                                                                           | 유기수산물을<br>원재료로 하여<br>제조·가공·유통<br>되는 식품                                                                                                                                     |
| 주요<br>품목 | 김, 미역, 다시마,<br>전복 등                                                                                                                                                                                                                                                                                               | 흰다리새우,<br>뱀장어, 왕우렁이 등                                                                                                                                                                                                                                                                                         | 김, 미역, 파래 등                                                                                                                                                                                                                                                                              | 간미역, 마른미역,<br>구운김, 마른김,<br>조미김, 다시마,                                                                                                                                       |
| 인증<br>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li> <li>● 양식장 환경, 수산 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 및 영양관리 등 <b>12개 부분, 44개 인증기준</b>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li> <li>- <u>유기수산종자 및 유기 사료 사용</u></li> <li>- 양식 장비와 시설 청소 시 허용물질만 사용</li> <li>-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li> <li>-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10 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1]</li> <li>● 양식장 환경, 수산 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관리 등 <b>12개 부분, 35개 인증기준</b>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li> <li>- 유기수산물 인증기준과 거의 유사하나, <u>종자·영양·질병관리 등 일부 기준이 유기수산물에 비해 완화</u></li> <li>-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li> <li>-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 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1]</li> <li>● 양식장 환경, 수산 종자, 양식관리, 가공 관리 등 <b>8개 부분, 23개 인증기준</b>에 부합하여 잡조 및 병해 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li> <li>- <u>해조류를 대상으로 하여, 유기수산물·무항생제 수산물과 달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 기자재, 사료 및 영양 관리 등에 관한 기준</u></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li> <li>● <u>유기수산물 및 유기 식품(첨가물)을 원료</u>로 하고 생산시설 가 공과정 등 <b>8개 부분, 33개 인증기준</b>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 산가공식품</li> </ul> |

| 구분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br>비사용 수산물                             | 유기가공식품                                                                    |
|-------------------|----------------------------------------------------------------------------|---------------------------------------------------------------------------|----------------------------------------------|---------------------------------------------------------------------------|
|                   |                                                                            |                                                                           | <u>제외</u><br>-가공관리에 관한 기준<br>포함              |                                                                           |
| 유효<br>기간          | 1년                                                                         | 1년                                                                        | 1년                                           | 1년                                                                        |
| 건수<br>(최근<br>5년간) | - '21년: 31건<br>- '22년: 88건<br>- '23년: 120건<br>- '24년: 131건<br>- '25년: 169건 | - '21년: 16건<br>- '22년: 45건<br>- '23년: 90건<br>- '24년: 129건<br>- '25년: 194건 | - '24년: 2건<br><br><b>* 유기수산물인증<br/>으로 전환</b> | - '21년: 75건<br>- '22년: 83건<br>- '23년: 94건<br>- '24년: 103건<br>- '25년: 108건 |

자료: 해양수산부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는 해조류 양식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활성처리제<sup>3)</sup>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해조류 양식 어가는 활용도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유기수산물 인증을 선호하고 있어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3)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 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 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황산이온·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
  - 나. 염소이온·황산이온·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
  - 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 가. 염소이온: 3.5% 이하 (이하 생략)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3.2) 개요 >

① 친환경수산물 인증 경영체 실태조사(어촌계, 법인 등으로 구성된 인증업체 10개소)

\* 해조류 양식경영체 대상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 폐지 조사 : 이견 없음

(어가에서 더 노력하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 인증을 획득할 유인이 없다고 조사됨)

②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 1,000명, 연령별·성별·지역별 표본 추출)

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 1위 무항생제 인증(50.0%), 그 외 유기수산물 인증(48.5%),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28.9%) 순으로 인지

2) 수산물 구매 시 고려요인 : 1위는 손질·조리·섭취의 편리함(16.1%), 그 외 원산지 및 자연산 여부, 위생과 안전성 등 순으로 고려

3) 구입경로 : 코로나 이전 대형마트가 1위였으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몰 13.9%p 증가로 비대면 유통채널 이용 증가 추세

자료 : 해양수산부

- 유기수산물 인증 선호 이유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대상인 해조류의 양식 특성상 유기수산물 인증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유기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이나 항생제 등도 첨가할 필요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타품종(어종, 갑각류 등)에 비해 유기수산물 인증 취득이 용이한 점<sup>4)</sup>, 유기수산물 인증의 경우 다른 친환경 인증제도에 비해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의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sup>5)</sup>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

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타 인증에 비교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 종자 및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비사용에 있는데, 해조류 품종의 경우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종자를 사용하고 있고, 양식특성상 동물용의약품과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조류품종의 경우에는 유기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임.

\* 어류, 갑각류 등은 양식과정 중 사료,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사료 등 사료기준 충족이 어려워 유기인증 취득이 어려운 상황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기수산물 인증에 비해 시장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생산자 및 소비자의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인증제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에 인증받은 2건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입법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제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인증 실적이 저조하여 사문화된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대상인 해조류는 현재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sup>6)</sup>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기수산물 인증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 5)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개요 >

- (목적)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 생산구조 확립
- (사업기간/지원조건/예산) '21~ 계속 / 국비 100% / 13,045백만원
- (사업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 등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
- (지원내용)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양식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영비 지원
  - (지급단가)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15%
  - (지급한도)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지급방법) 최초 지급연도부터 어가당 3~5년(3회) 지원하고, 유기인증의 경우 5년 이후 지급한도 50%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 6) 유기수산물(2025년 기준) 인증 총 164건 중 김(58건), 미역(46건), 다시마(39건), 전복(9건), 매생이(7건), 파래(4건), 톳(1건) 등으로 유기수산물 인증 중 대부분은 해조류로 구성됨

## 2)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 개정안에 따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sup>7)</sup>와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현장의 수요<sup>8)</sup>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임.

### <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통계(2025년) >

(단위: 건)

| 총 계 | 흰다리 새우 | 뱀장어 | 왕우렁이 | 숭어 | 강도다리 | 넙치 | 전복 |
|-----|--------|-----|------|----|------|----|----|
| 194 | 99     | 59  | 17   | 7  | 5    | 4  | 3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현행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원물로 유통·판매하는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무항생제수산물로 인증받은 수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무항생제 인

- 7)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3.2.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설문조사 1,000명, 연령별·성별·지역별 표본 추출)에 따르면,  
 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인지도 조사는 무항생제 인증(50.0%), 유기수산물 인증(48.5%),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28.9%) 순으로 인지하고 있고,  
 2) 수산물 구매 시 고려요인으로는 손질·조리·섭취의 편리함(16.1%), 그 외 원산지 및 자연산 여부, 위생과 안전성 등 순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3) 구입경로는 코로나 이전 대형마트가 1위였으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몰 13.9%p 증가로 비대면 유통채널 이용 증가 추세임
- 8)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연구용역('24.10.)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조사 결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여가의 경우 가공업체(33.8%), 전문 유통업체(28.0%) 등 가공판매 비중이 높았으며, 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는 무항생제가공식품인증 부재로 무항생제 수산물을 펠렛 등으로 가공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현행법령상 무항생제 인증 마크 표시·부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

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sup>9)</sup>에 따르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의 활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무항생제 인증 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 <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연구용역('24.10.) 주요 내용 >

- ①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해서만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조·가공·유통 단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유기식품은 생산자, 제조·가공자, 취급자(운송, 포장, 판매 포함)로 인증 대상을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 인증 관리가 가능한 차이가 있음.
- ② ‘무항생제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식약처 고시 기준의 1/2 이하) 이하인 경우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원물 단계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1) 소비자 신뢰 저하 요인으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에도, 가공 과정에서 혼입, 오염 가능성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부재한 점
  - 2) 제조·가공업체의 인증 참여 유도 미흡으로 유기가공식품과는 달리, 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은 인증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
  - 3) 제도 연계성 부족으로 ‘무항생제 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식품’ 간의 이력 연계 및 인증 확장이 어렵고, 관련 법령상 연동 규정도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

자료 : 해양수산부

- 또한,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2020년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도 인증을 부여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산분야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없어 농

9)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연구용역('24.10., 해양수산부)

업부문 대비 제도적 형평성이 저하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선례를 참고하여 수산분야도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인증의 범위 확대와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친화적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자에게도 새로운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무항생제수산물 수요 확대로 어가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의 다양화·차별화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산식품 신뢰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으로,

기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분야의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과 유사한 체계로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농업),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수산) 개요 >

| 구분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농업)<br>(현행 실시)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수산)<br>(인증기준안)                                |
|---------------|---------------------------------------------------------|----------------------------------------------------------|
| 정의<br>(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정의) 제5의2.<br>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br>사거나 유기식품과 |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정의) 제5의3.<br>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br>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

| 구분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농업)<br>(현행 실시)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수산)<br>(인증기준안)                                                                                                         |
|-------------------|-----------------------------------------------------------------------------------------------------------------------------------|-----------------------------------------------------------------------------------------------------------------------------------|
|                   |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br>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br>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 인증<br>대상          |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br>( <u>무농약농산물 50% 이상</u> 포함된<br>가공품)                                                                             |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br>( <u>무항생제수산물 50% 이상</u><br>포함된 가공품)                                                                           |
| 인증<br>기준          | -원재료 및 부재료<br>( <u>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95% 이상</u> )<br>-경영·시설 관리(세척, 소독, 해충,<br>병원균, 포장 등)<br>-가공방법(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br>방법 이용, 순수성 무훼손 원칙) | -원재료 및 부재료<br>( <u>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 95%이상</u> )<br>-경영·시설 관리(세척, 소독, 해충,<br>병원균, 포장 등)<br>-가공방법(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br>방법 이용, 순수성 무훼손 원칙) |
| 유효<br>기간          | 1년                                                                                                                                | 1년                                                                                                                                |
| 주요<br>품목          | <u>잼류, 과채주스, 담근청, 장류,</u><br><u>곡류가공품(현미볶음 등)</u>                                                                                 | <u>필렛, 건조품, 장류, 즉류 등</u>                                                                                                          |
| 건수<br>(최근<br>5년간) | - '21년: 163건<br>- '22년: 176건<br>- '23년: 174건<br>- '24년: 176건<br>- '25년: 154건                                                      | -                                                                                                                                 |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제성 편익 제고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해양수산부는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업체(159개소)를 대상으로 86%(126개소)가 찬성한다는 점,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양한 친환경 가공식품의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활새우 업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생산자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의 도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 자료 없이 관련 업체의 설문조사로만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해양수산부는 농업분야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기준에 준하여 신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농업분야의 경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주요 원료가 되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건수가 16,810건,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의 종류<sup>10)</sup>도 23여개에 달하는 데 비해,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통계(2025년) >**

(단위: 건)

| 총 계 | 곡류<br>가공품 | 과채<br>가공품 | 두부류<br>등  | 다류        | 서류<br>가공품 | 침출차<br>액상차 | 면·밀가루<br>·빵류 |
|-----|-----------|-----------|-----------|-----------|-----------|------------|--------------|
| 154 | 21        | 18        | 13        | 12        | 11        | 11         | 8            |
|     | 음료류       | 장류<br>잼류  | 기타<br>가공품 | 조미<br>식품류 | 두류<br>가공품 | 고춧가루       | 기타           |
|     | 8         | 8         | 7         | 7         | 6         | 5          | 19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분야의 경우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주요 원료가 되는 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건수가 194건이고,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품목도 필렛, 건조품, 장류, 즙류 등 소수인 점을

10)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주요 품목 : 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두부류등, 다류, 서류가공품 등 23개

고려해 볼 때,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소비자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정안에 따른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용어와 관련하여 ‘무항생제원료’는 축산물과 수산물 둘 다 해당되는 개념이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1)</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9 |

11)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 참고 1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개요

### □ 개요

-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유효기간) 1년(인증 유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 필요)
- (등록현황) 유기수산물 170건, 무항생제수산물 144건, 유기가공식품 107건('25.9월 기준), 활성처리제 비사용 0건\*

\* 인증실적이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에 통폐합하는 등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추진 중

###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4종)

| 인증명<br>(등록대상)              | 주요 내용                                                                                                                                                                                                                                                       | 인증표시                                                                                  |
|----------------------------|-------------------------------------------------------------------------------------------------------------------------------------------------------------------------------------------------------------------------------------------------------------|---------------------------------------------------------------------------------------|
| 유기수산물<br>(양식수산물)           |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 및 영양관리 등 12개 부분, 44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수산종자 및 유기사료 사용</li> <li>• 양식 장비와 시설 청소 시 허용물질만 사용</li> <li>•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li> <li>•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10 이하</li> </ul> |   |
| 무항생제수산물<br>(양식수산물(해조류 제외)) |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관리 등 12개 부분, 35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수산물 인증기준과 거의 유사하나, 종자·영양·질병관리 등 일부 기준이 유기수산물에 비해 완화</li> <li>•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li> <li>•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 이하</li> </ul>     |  |
| 활성처리제 비사용<br>(미역 등 해조류 7종) |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양식관리, 가공관리 등 8개 부분, 23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조류를 대상으로 하여,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과 달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기자재, 사료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외</li> <li>• 가공관리에 관한 기준 포함</li> </ul>   |  |
| 유기가공식품<br>(수산물 가공식품)       | 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하고 생산시설, 가공공정 등 8개 부분, 33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가공식품                                                                                                                                                                                    |  |

\*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

### □ 등록 및 관리절차



## 참고 2

## 친환경수산물 인증직불제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적)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 생산구조 확립
- (사업기간/지원조건/예산) '21~ 계속 / 국비 100% / 13,045백만원
- (사업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 등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
- (지원내용)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양식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영비 지원
  - (지급단가)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15%
  - (지급한도) 어가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지급방법) 최초 지급연도부터 어가당 3~5년(3회) 지원하고, 유기인증의 경우 5년 이후 지급한도 50%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

### □ 추진 경과

- 「수산공익직불제법」 근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시행('21.1.)
- 지원 조건, 지급단가 및 지급한도 등 변경('25.1~)
  - ① HACCP 등록대상: ('21~'24) 육상수조식양식 → ('25) 육상수조식양식+가두리·축제식양식
  - ② 지급단가: ('21~'24) 품목별 생산단가×경영비증가분 15%×지원률 80%×인증면적(ha) → ('25) 인증품목별 출하·판매 실적 × 경영비증가분 15% × 지원률 100%
  - ③ 지급한도: ('21~'24) 인증면적 60ha → ('25) 어류 6,500만원, 그 외 품목 3,000만원

### □ 추진 절차

- 사업공고(1~2월)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3월) → 이행점검 및 사업자 확정(4~11월) → 보조금 교부(12월)

## 참고 3

## 제도 신설 추진 배경 및 내용

### □ 운영현황

- 친환경 수산물 인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제 시행('21)\*\* 이후 어업인의 관심 증대로 신규 인증 건수 증가 추세

\* ('13) 4건 → ('16) 74 → ('19) 84 → ('21) 127 → ('24) 311 →('25.9월) 421

\*\*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에 인증소요 경영비 일부 지원(최대 6,500만원)

- 특히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수산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

\* 무항생제가공식품인증 부재로 무항생제 수산물을 필렛 등으로 가공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현행법령상 무항생제 인증 마크 표시·부착이 불가

### □ 개정배경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시행('13년~) 제도의 효과성 점검을 위해 세부 인증별 활용도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

- 검토 결과, 인증건수\*가 전무한 사문화된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체계 개편 및 법률 개정 추진

\* (유기수산물) 170건 (유기가공식품) 107건 (무항생제수산물) 144건 (활성처리제비사용) 0건

### □ 주요내용

#### 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폐지

- (개정사유) 시장 수요가 없고, 유기 수산물 인증기준과 차별성이 모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에 대한 정비 필요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대상인 해조류 양식 어가는 인증기준에 큰 차이가 없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기수산물 인증을 선호하여 유기수산물 인증 취득 중

- (개정내용)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 ②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 (개정사유)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 등으로 무항생제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인증 신설 필요
- (개정내용)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여 새로 규정
- \* (현행) 유기,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폐지~~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  
(변경) 유기,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신설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인증

## □ 제도개편안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체계 개편 >

| 현 행(인증건수)         |   | 개 정 안              |
|-------------------|---|--------------------|
| 유기수산물(170건)       | → | 유기수산물              |
| 유기가공식품(107건)      |   | 유기가공식품             |
| 무항생제수산물(144건)     |   | 무항생제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0건) |   | (신설)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   | (폐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 참고 3

### 인증 현황 및 통계

#### □ 친환경 인증 수산물 통계

(단위: 건수)

| 구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총계       | 4   | 39  | 60  | 74  | 88  | 76  | 84  | 90  | 127 | 216 | 284 | 369 | 421 |
| 유기수산물    | -   | 5   | 10  | 15  | 17  | 12  | 15  | 15  | 32  | 92  | 111 | 135 | 170 |
| 유기가공식품   | 2   | 33  | 46  | 54  | 63  | 55  | 61  | 68  | 77  | 82  | 88  | 100 | 107 |
| 무항생제 수산물 | 2   | 1   | 4   | 5   | 8   | 9   | 8   | 7   | 18  | 42  | 85  | 132 | 144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2   | 0   |

####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지원 통계

(단위: ha, 백만원, 개소)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예산          | 9,379 | 9,379 | 9,379 | 14,494 | 13,045          |
| 지원어가수       | 252   | 593   | 671   | 875    | 1,044<br>(신청기준) |
| 지원금액        | 4,714 | 9,193 | 9,202 | 13,224 | 정산 중            |
| 어가당<br>지원금액 | 18.7  | 15.5  | 13.7  | 15.1   | 정산 중            |